
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6. 30.(화) 총 5매(본문3, 붙임2)	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김대영, 주무관 이호성 • ☎ (044) 201-3358	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조현수, 사무관 김진형 • ☎ (044) 201-6754	
보 도 일 시	2020년 7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국토부-환경부,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”

-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소재 주택 100호 시범사업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.
-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 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-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(수)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국토부가 ‘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*는 중위소득 45%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.

* 지원자격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 가구, 4인기준 213.7만 원

<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>

단위: 가구

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
9,787	21,207	18,307	17,011	22,264	20,981

-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*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.

* 취약계층 : 결손가구, 장애인가구, 독거노인가구 등

<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 실적>

단위: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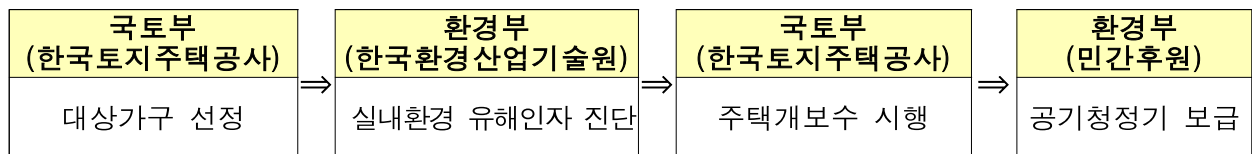
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2,251	2,250	1,528	1,700	1,700	1,700

- 코로나-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,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,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.

-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.
-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,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.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.

<시범사업 추진 절차>



- 국토부,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,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(☎ 044-201-33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·컨설팅(100가구)

- (대상) 국토부(LH)에서 선정·추천한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
- (선정) 주택 노후도, 수선향목, 지역, 거주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가구 선정

< 대상가구 선정기준 >

순위	항목	내용
1	주택 노후도	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 중 주택 노후도가 높은 '대보수' 가구
2	수선향목	'대보수' 가구 중 건축마감(도배, 장판 교체) 지원이 포함된 가구
3	지역	'20년 수선계획에 포함된 대구광역시 소재 가구
4	개선공사 일정	개선공사를 7월~10월에 실시하는 가구
5	거주면적	거주면적이 작은 가구

- (방법) 전문인력*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내환경 유해인자** 진단·측정 및 결과설명,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방안 안내

*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원과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2인 1조로 현장방문

** 곰팡이, 미세먼지(PM-10, PM-2.5), CO₂, TVOC, HCHO, 집먼지진드기 7종

② 개선효과 측정·분석(30가구)

- (대상) 진단 가구 중 주택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가구
- (선정) 무작위 추출
- (방법)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원이 개선공사를 완료한 가구를 방문(최소 15일 이후)하여 실내환경 유해인자 재측정 및 개선 전·후 효과 분석 실시

※ 추가로 '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'에서 개선 지원한 가구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및 정책 활용방안 도출

③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(15가구 내외)

- (대상)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나, 개선효과 측정 결과 미세먼지(PM-10, PM-2.5) 저감이 필요한 가구*

* PM-10: 75 μ g/m³ 이하, PM-2.5: 35 μ g/m³ 이하

- (선정) PM-10 또는 PM-2.5 평균 측정값이 높은 가구순으로 선정
- (방법) 후원기업(웅진코웨이㈜)에서 공기청정기(10평~15평) 설치 및 2년간 필터·소모품 관리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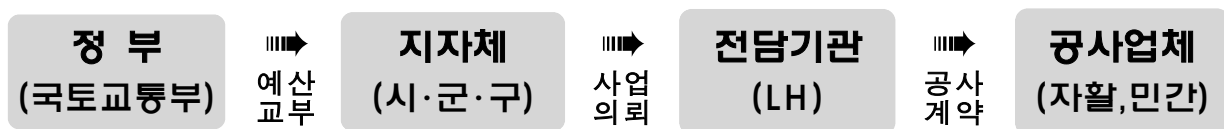
* 렌탈 지원기간(2년) 종료 시 사용기기 반환이 원칙이나 자비용 부담으로 연장사용 가능

□ **사업개요**

- (정 의) 저소득층 자가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사업
 - (목 적) 주택상태를 개선하여 주거보장 강화,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
 - (유 형) 매년 약 2만가구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수선하는 연간단위사업
- (지원대상) 주거급여 수급권자* 中 자가가구**
 - * 자 격 : 중위소득 45% ('19년 44%→45%)이하 (4인가구 213.7만원, 2020년)
 - **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(비주택, 조사불가 주택은 제외)
- (지원수준) 가구소득, 주택노후도*에 따라 차등 지원
 - *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,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 결정
- (지원방법)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개량 지원

□ **사업추진 체계**

- (역할분담) 국토교통부 예산교부, 시·군·구 사업의뢰, LH 수선대상자 선정 및 수선 실시



- (LH의 역할) 주택조사 → 주택수선 → 이력관리

구 분	주요내용	비 고
주택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구조안전, 설비, 마감 등을 점검 ◦ 주택의 노후도 평가 및 보수범위 결정 	상시
주택수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간수선계획 수립 (수선대상자 선정) ◦ 지자체 협약체결 ◦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 ◦ 공사 준공 및 지자체 사업비 정산 	매년반복
정산 및 이력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비 정산 및 보고 ◦ 하자보수 시행 	상시